

서어비스產業의 開放化와 對應方案

李 天 构*

.....<目 次>.....

- I. 서어비스開放化와 관련된 理論的 考慮
- II. 서어비스開放化에의 對應
- III. 要約 및 結論

I. 서어비스開放化와 관련된 理論的 考察

1. 서어비스產業과 國際交易

서어비스란 財貨와 구별되는 經濟交體로서, 財貨가 有形的이고 保管可能한 것인데 비해 대체로 無形의이고 보관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 海上運送, 保險, 음식점영업, 법률·회계업무 등 여러가지 다양한 것이 서어비스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 이들을 페뚫는 하나의 기준은 없으나 최근의 우루파이·라운드의 協商시작과 더불어 관심의 대상으로 되면서 그範圍區劃을 조금씩 분명히해 가고 있다.

國民所得統計에서는 產業을 農林業, 鎳工業 및 서어비스로 나눈다. 이런 視角에서는 第一次產業이나 第二次產業이 아닌 第三次產業의 生產物이 서어비스가 된다.

이러한 第三次產業에는 建設, 電氣, 通信·衛生, 運輸·保管·荷役, 金融·保險·不動產, 都小賣와 같이 民間部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公共行政 및 國防처럼 政府部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서어비스의 보관이 어렵다는 性質에 따라 서어비스는 生產되는 즉시 소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서어비스가 無形의이면서 보관불가능하다는 성질에 따라 서어비스의 生產者와 서어비스의 消費者는 時間的, 地域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 그에 따라 서어비스는 원칙적으로 장거리 수송을 전제로 하는 國際的 交易의 대상이 될 수 없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副教授。

이 論文은 1986년도 문교부 學術研究造成費에 의하여 作成되었음。

(1) 농음테이프에 수록된 음악이나 전화문의에 대답하는 서어비스 등은 보관가능한 서어비스이므로, 보관불가능해야 서어비스라는 종래의 기준에 대한 예외가 된다.

는, 이른바 非交易財로 여겨져 왔다.

各國이 經濟發展을 해나감에 따라 所得이 높아지고 需要가 擴大・多樣化되면서 一次產品이나 二次產品보다 三次產品인 서어비스의 相對的 比重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어더까지나 個別國家內의 현상이었으며, 國際交易의 關心에서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科學技術, 특히 交通・通信技術이 발달하게 되고, 社會生活이 複雜化되고 專門化되면서 갖가지 서어비스에 대한 요구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되자, 非交易財로서의 서어비스도 變質되었다.

交通技術의 발달은 國際的 交易과 관련하여 서어비스의 生산자와 소비자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지리적인 거리가 부여하는 서어비스 國際交易의 限界性을 상당히 완화하거나 除去하였다. 또 通信技術의 發達은 국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은 時間帶에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게 하였다. 종래에는 서어비스의 生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필요가 국내거래에서나 충족되었으나, 이러한 기술발전이 있게 되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사이의 국제거래에서도 그러한 필요가 점차 충족되게끔 되었다. 나아가 서어비스의 種類가 다양화되었다. 經濟活動이 점차 專門化되어 갈에 따라 종래 家事勞動의 상당부분이 독립된 서어비스生產者에 의해 代替되어 나갔고, 또 거대한 工場에서 이루어지던 여러가지 일이 각각 分化되어 서어비스 供給行爲로 獨立한 다음, 공장에 서어비스로서 提供되는 형태로 형태변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다른 活動과 分化되어 있지 않았던 經濟行爲가 이제는 獨立的으로 되어 客觀化된 다음 去來의 대상으로 되었다. 서어비스의 종류가 많아지고 이를 상당 부분이 去來의 대상으로 되었다. 교통・통신기술에 의존하며 그러한 것들의 去來범위가 國內的인 것으로부터 國際的인 것으로 擴大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많은 서어비스가 상당한 거리를 가지는 지역간에서 去來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國際去來의 對象으로서 중시되는 서어비스로서는 情報・通信產業 및 데이타처리, 銀行이나 保險 등 金融業, 海運이나 航空 등 運輸業과 운수관련產業, 建設 및 엔지니어링產業, 法律・會計 등 專門서어비스業, 廣告業, 教育・醫療 및 健康管理產業 등 여러가지가 있다.

2. 서어비스開放의 背景과 意味

美國은 1970年代初부터 서어비스交易의 自由化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근년에 들어와 막대한 商品貿易收支赤字를 갖게 되

자 財貨貿易의 赤字를 서비스貿易의 黑字로서 相殺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86년 10월 우루과이의 푼타·델·기스레에서의 GATT會議에서 서비스의 多者間協商을 발동시켰고, 시기적으로 이것을 전후해서 여러 나라와 雙務的 協商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美國은 기술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의 性格이 변화되어 이제는 財貨와 유사하게 되었으니, 財貨의 自由로운 交易으로부터 交易當事國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되는 것(gain from free trade in commodities)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自由롭게 交易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財貨交易에 대한 GATT와 대응하게끔 서비스에 대해서도 自由로운 交易을 보장하는 規則 내지 約束을 마련하여 制度化하자는 것이다.

이런 目的을 위하여 美國은 GATT의 適用範圍를 財貨에서 서비스로 擴大하는 것, 즉 GATT의 모든 약관에 쓰이는 財貨(goods)의 의미에 평상적인 財貨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하게끔 하는 새로운 규정을 하나 삽입하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란 無形의이고 保管이 어렵다는 性格을 가진다는 것 이외에도 公共財(public good)의 性質을 가지고 있고, 獨寡占的으로 공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 다른 財貨나 서비스의 生產과 긴밀한 聯關效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聯關의 관점이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이 인지되고 있다. 예컨대, 國家安保와 관련을 가지는 서비스로서 行政 및 國防, 金融, 運輸, 通信 등이 摘示된다. 다른 산업의 生산에 대한 기간산업이 되면서 이들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다른 財貨나 서비스의 生產에 外部經濟(external economies)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教育, 金融, 運輸, 通信 등이 摘示되고 있다. 또 金融이나 運輸, 通信 등은 어떤 經濟社會의 下部構造를 形成하여 公共財로서의 性格을 가지면서 經濟社會의 基幹產業에 근접해 가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의 國際的 交易이 논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性格을 가지는 一部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다소간의 規制(regulation)가 있어 왔다. 서비스의 生產과 消費를 경쟁시장의 논리에 방임하지 않고, 社會公共的인 視角에서 서비스의 生產, 販賣 또는 消費를 規律해 왔다. 특히 서비스市場에의 참여를 制限하였고, 이렇게 제한된 서비스供給者의 서비스의 生產·供給行爲를 監督·規制해 왔다. 예컨대 教育서비스, 金融서비스, 運輸서비스, 通信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서비스供給者가 되기 위하여 미리 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했고, 서비스의 生產者로 된 이후에도 서비스 공급행위의 갖가지 側面, 갖가지 段階에서 行政的 지도·감독을 받아야 했다.

서비스開放이란 어떤 國民經濟가 外國의 서비스供給者로 하여금 自國內에다 서비스를 供給하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기술된 서비스市場의 性格에 따라 종래에는 서비스의 供給者를 制限해 오는 과정에서 外國의 供給者가 참여할 여지가 없었고, 國제적인 거리의 장벽때문에 의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자국에 와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한 經濟的妥當性도 없었다. 그러나 서비스의 生產과流通에 대한 기술이 변화하게 되어 國際的交易이 가능하게 되고, 또 美國 등 一部國家가 서비스의 自由로운交易을 강력히 主張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서비스市場을 개방하여 外國의 서비스 供給者에게도 國內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여, 서비스開放의 問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의 供給이란 財貨의 供給과 다소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海外로부터의 財貨의 공급이 海外에서 生產된 다음 獨立性을 띠고 客觀化가 된 財貨를 輸入해 오는 것인데 비해, 外國人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은 많은 경우 外國인이 國내에 와서 國내에서 生產을 하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서비스중에는 비록 有形化되고 保管이 可能한 서비스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또 重要한 서비스는 서비스의 需要者에 接近해 있으므로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內在的必要를 가지고 있음을 또는 서비스 本來의 無形性과 保管不能性을 상당한 정도 아직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3. 서비스開放의 爭點

서비스의 自由로운交易을 약속해서 그것도 財貨와 같이 自由로운 國際交易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그리고 그것에 대응하여 개별경제의 서비스시장을 외국인공급자에게開放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서비스는 財貨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自由로운交易을 배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위에서 설명된 서비스의 相反되는 性格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양단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非交易財로서 인식되던 서비스중 이제는 상당한 部分이 變質되어 交易財化하였으니, 그것을交易에 대상에 포함시켜서,交易에 의한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택하고 나면, 서비스의交易을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서비스市場을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開放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된다. 서비스의 國際的交易을 自由化하여 比較優位에 입각하여 외국에서 값싸게 生產된 서비스를 구입해다 씀으로써 生產過程에서는 生產原價를 줄이고 消費行爲에서는 效用을 增大시킬 수 있게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技術發展에 의한 서비스의 性質變化 보다 서비스를 非交易財로 규정하였던

公共性, 供給의 獨寡占性과 그에 따른 規制의 必要性, 國家安保와의 關聯性 등을 중시하는 입장은 서비스의 自由로운 交易에 찬동할 수가 없고, 따라서 서비스의 開放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서비스의 開放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이완되게 됨으로써 國家安保, 公共性, 外部經濟性 등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되는 損失이 서비스를 開放함에 따라 서비스 供給價格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利益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비스와 自由로운 交易을 주장하는 입장은 오늘날 많은 서비스가 다른 財貨나 서비스의 生產을 위한 中間投入物(intermediate input)이 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모든 서비스가 단순히 消費되고 마는 것이라면 서비스의 自由로운 交易이 배제되어 서비스價格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단지 消費者剩餘의 회생이 따라올 뿐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生產을 위한 中間財라고 하면 不當하게 높은 서비스價格이 그것을 쓰는 모든 다른 產業의 原價를 높이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력을 해치게 된다. 中間投入物로 쓰이는 서비스의 比重이 크면 클수록 경쟁력에 있어 해를 입는 產業이 많아지고 경쟁력이 惡化되는 정도가 심해지게 되며, 극단에 가서는 거의 모든 產業이 경쟁력을 잃게 되어 經濟發展이 不可能하게 된다.

이러한 見解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탱하게 하는 좋은 예로서 브라질의 컴퓨터產業을 적시한다. 브라질은 컴퓨터產業 내지 情報通信產業을 開放하여 브라질의 모든 情報가 公開되고 이로 인해 브라질이 外部에 불가피하게 의존하게 되어 安保가 위협받게 될 것을 걱정한다. 브라질과 같은 國家(이런 견해에 따르면 美國이나 소련처럼 超大國은 못되나 상당한 세력이기 때문에 獨立된 힘으로서 남아 있어야 하며 美國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國家)는 스스로의 안위를 지킬 獨自的 情報通信體系를 구축·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產業의 開放에 따라 自國의 生產能力이 마멸되고 外國에 전적으로 의존하게까지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여긴다. 情報通信產業이 開放되지 않아 브라질 내의 다른 產業들이 一時의으로는 輸入되어 오는 機器로부터의 서비스보다 열등하고 값도 비싼 브라질產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長期的으로는 獨自의 情報通信能力을 지니게 됨으로써 (軍事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外國 供給者の 자의적이고 獨占의 行爲에 좌우되지 않고 經濟의 全般的 體系를 정비하여 진정한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여긴다.⁽²⁾

그러나 서비스開放의 必要性을 적시하는 입장은 브라질의 이러한 選擇때문에 브라질의 大學과 產業界는 물론 기타 모든 곳에서 정보처리능률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쟁

(2)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중 UNCTAD에서 나온 資料를 참조하라.

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앞으로 브라질의 더 이상의 經濟發展을 不可能하게 하리라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브라질과 다른 開發途上國에서의 컴퓨터의 價格, 利用度 등에 있어서의 격차를 강조한다.

서비스市場을 開放함으로써 短期的 내지 靜態的으로 서비스 供給價格이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그것을 쓰는 消費者나 生產者가득을 보게 될 것임은, 현재 일부 서비스의 生產과 관련된 技術이 國別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낙후된 기술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격차를 단시일내에 극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長期的이고 動態的으로서도 서비스를 開放하고 自體내에서 서비스 生產能力을 양성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는 반드시 分明하지 않다. 서비스를 原則的으로 開放해야 옳은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는, 서비스產業의 一部가 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產業이나 현재 幼稚產業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면, 쉽게 判斷하기 어려운 問題가 된다.

그런데 서비스의 開放과 관련된 이러한 學理의이고 原則의인 側面보다 더 진박한 것은 美國이 그의 經濟外交力を 십분 동원하여 雙務的 協商過程을 통해 여러 나라에다가 서비스市場의 開放을 거의 강요하다시피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의 保險市場의 開放이 예시하듯이 美國의 요구에 상대적으로 수용적이며, 美國의 다른 나라와의 雙務協商에 대해 先例를 提供해야 하는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는 듯한, 매우 딱한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를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서비스의 開放이 經濟發展에 得이 되는지 損이 되는지를 檢討하고, 그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開放與否를 決定할 수 있는 충분한 裁量性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교적 단시일내에 서비스를 開放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은 서비스市場을 開放하지 않는 것을 公定하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不公定한 貿易慣行에 대해 소위 통상법 301條에 의거하여 각종 무역제재조치나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무역제재조치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대상은 美國에 대해 輸出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들이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다.

반면에 美國은 서비스開放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역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의 무역체한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을 비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가 중심이 되는 多者間協商에서 美國은 서비스交易의 自由化를 실현하고 農產物이나 知的所有權問題 등 問題를 해결하게 되면, 商品貿易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나 市場秩序維持(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등 輸入制

限措置를 더 이상 強化하지 않음(standstill)은 물론 이를 및 섬유다자협정(multiple fibre agreement) 등 수입제한조치를 완화 또는 폐지(rollback)할 수도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그널은 그야말로 示唆에 불과할 뿐이요,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開途國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서어비스市場을 비롯한 모든 市場을 開放하여 서로 輸出을 增大시킴으로써 自由貿易의 利益을 폐함은 그 自體로서 중요하고 必要한 일이니 이런 일은 美國으로부터의 standsfill이나 rollback과 같은 대가의 期待 없이도 수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다.⁽³⁾

서어비스開放이 가져올 效果의 不確實性과 美國의 서어비스市場開放에 대한 要求에 임하여 브라질과 인도로 代表되는 强硬 開途國은 서어비스 市場開放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브라질이나 인도만큼 큰 劍勢이 되지도 못하는 여타 開途國들은 原則的으로 자신들의 입장은 확정하지 못한 채 美國의 요구를 外面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어, 美國과 강경개도국 사이에서 어떤 妥協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우루과이·파운드라는 多者間協商에 기연하여 美國과의 雙務的 協商에서 보다 작은 壓力を 받게 될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한편, 서어비스開放의 經濟外交的 問題가 대두함을 전후하여 學問的으로도 서어비스의 本質과 서어비스 交易正當性을 검토해 보려는 努力이 활발히 나타났다. 이들은 우선 서어비스의 本質을 탐구하고자 서어비스를 여러가지로 分類하는 일을 시작하였다.前述한대로 서어비스는 多岐한 種類의 것이며, 아직도 일부는 非交易財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고 일부만이 交易財化되어 있다. 또 交易財화한 서어비스도 모두 國際的 交易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중一部만이 自由로이 交易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美國에 의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서어비스를 여러가지 基準에 따라 分類하여 서어비스의 어떤 性質 때문에 어떤 서어비스의 交易에는 별 異議가 없으나 다른 서어비스의 交易과 관련하여서는 반발이 심한지가 탐구되게 되었다. 나아가, 서어비스의 國際的 交易이란, 財質에 대한 國際的 交易이 그러한 것처럼, 比較優位의 原理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지하고 나서, 각국이 각각 어떠한 서어비스에 대해 비교우위를 지니게 될 것이며, 그로써 國際的 서어비스交易의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서어비스의 種類가 多樣하다 함과 서어비스交易과 관련되어 나타난 相異한 見解가 각각

(3) M. Wolf, "Will the Uruguay Round be the Twilight of the GATT?" Conference Paper on Priorities and Prospects for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nvened by Trade Policy Research Center, 1986.

다른 種類의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主張을 폐고 있을 수 있다는 可能性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學理的으로 서비스의 本質을 파헤쳐 나아간다는 것이 앞으로 4년여에 걸친 우루파이·라운드를 협상해 나감에 있어 타협의 실마리와 素材를 밝혀주고 마련해 줄 중요한 관건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可能性은 작지만, 各國이 保護하거나 自體供給을 확보하려는 서비스와 서로 交易하여도 서비스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交易하기로 약정한 서비스만을 比較優位의 原理 등 國際貿易의 原則에 따라 交易함으로써, 서로 아무런 反目없이 서비스의 國際的 交易을 확대해 나가고 그로써 經濟發展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區分과 本質에 대한 탐구가 서비스交易과 관련된 國際的인 繁張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그로써 우루파이·라운드를 成功的으로 성사시키는 계기가 될 것 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는 바, 이하 서비스의 本質과 比較優位의 源泉을 탐구한 學問的努力을 살펴 보자.

4. 서비스의 分類

서비스를 분류하여 국제무역과 관련된 含蓄을 찾아 보려고 한 學者중 가장 중요한 三人으로서 Bhagwati, Stern, Grubel을 들 수 있다. 지난 수년동안 이들은 서비스를 區分하는 方法을 다소간 修正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왔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이들은 서로 거의 同一한 分類에 도달하게끔 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들의 分類를 Bhagwati의 分類方式에 따라 소개하고, Stern이나 Grubel의 分類가 Bhagwati의 分類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 본다.

Bhagwati는 서비스의 供給者와 需要者 사이의 關係에 주목하여 이들 둘이 近接해 있어야 去來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이들이 地理的으로 근접해 있을 必要是 없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그는 後者를 長距離서비스(long-distance services)라고 지칭하는 데, 전파를 통해 전달되고 거래되는 음악, 資料情報 등을 그것의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서비스는 일단 생산되고 나면 生產者로부터 分離·獨立되어 그 自體로서 客觀性을 획득한다. 그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그 성격이 財貨와 아주 近似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은 서비스는 보관되었다가 차후에 팔릴 수 있으며 또 物體의一部分으로서 客觀化되어 날개로 팔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점은 더욱 분명하다.

장거리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또는 단거리서비스의 거래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公급자와 서비스의 수요자가 서로 근접해 있어야 한다. 이때 이들 양자는 去來의 成立을

위한 必要條件으로서 근접해 있어야 하기도 하고 또 반드시 근접해 있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은 없으나 이들이 서로 근접해 있는 것이 거래를 신축성 있고 效率的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접해 있기도 한다.

서어비스의 국제적 교역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物理的 距離에도 불구하고 서어비스의 공급자와 서어비스의 수요자가 서로 근접해 있도록 되려면, 서어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한편 또는 양편이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야 한다. 여기에서 단거리서어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중 어느 쪽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시 3가지로 세분된다.

그 첫째는 공급자가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서 서어비스를 공급하는 경우(mobile-provider, immobile-user)로서, 中東의 建設用役을 위해서 우리나라나 인도의 建設人力이 中東으로 이동해 간 다음 그 곳에서 건설서어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된다.

그 두번째는 수요자가 공급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어비스를 購入하는 경우(mobile-user, immobile-provider)로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왕이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서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사가 있는 美國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가 예가 된다. 이때 심장수술을 위해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뿐만 아니라 수술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그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同時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시설과 지원체계를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수술서어비스의 공급자가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서어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공급자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 세번째 경우는 서어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어느 쪽이 去來相對方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 가도 좋은 경우(mobile-user, mobile-provider)로서, 이용, 재단, 요식업경영 등 각종 잡다한 서어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stern의 서어비스分類도 이상의 Bhagwati의 分類와 거의 비슷하다. 즉 그는 장거리서어비스를 “分離된 서어비스(separated services)”라고 지칭하는 테, 이러한 分離된 서어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어느 쪽도 이동하지 않는다(no movement of providers and consumers)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分離된 서어비스가 아닌 것을 다시 3가지로 구분하는 테, 공급자만이 움직이는 경우(movement of providers only), 소비자만이 움직이는 경우(movement of consumers only), 공급자와 소비자가 움직이는 경우(movement of providers and consumers)의 3가지 구분이 그것이다.

서어비스交易의 問題란 잘못 設定된 問題라고 力說하는 Grubel은 國際交易의 課題는 財貨의 自由로운 交易을 확보하는 것과 資本과 人力의 自由로운 移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함으로써, 장거리서비스 내지 分離된 서비스를 財貨와 同一하게 취급하고, 기타 단거리서비스의 交易의 問題는 실질적으로 資本의 國際的 移動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勞動의 國際的 移動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또는 이들 두가지가複合된 문제라고 적시한다.

서비스의 分類를 통한 이러한 努力이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오늘날 서비스交易과 더불어 이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 서비스란 이상의 모든 서비스가 아니고, 주로 공급자가 이동하는 種類의 서비스라는 것이다.

技術發展과 더불어 많은 서비스가 交易財貨로 되었다고 하나 그것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同一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 중 완전히 客觀化되어 財貨와 함께 된 것의 交易은 종래 있던 財貨의 自由로운 交易과 관련된 규칙만을 가지고도 아무런 무리와 잡음없이 국제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 음악이나 統計資料가 수록된 레코드나 테이프는 별 문제없이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으며, 이들의 國際去來와 더불어 야기되는 잡음이란 다른 財貨의 국제교역과 더불어 야기되는 잡음보다 그 정도가 차라리 작다고까지 할 수 있다.

또 수요자가 공급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도 큰 논란은 없는 것 같다. 우선 이러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국가내에서 서비스의 수입은 규율하더라도 거의 이동이 불가능한 공급자 사이에서 아무런 이해의 마찰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느쪽이 이동하더라도 좋은 서비스의 種類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은 경쟁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國際的 交易도 현재 별 문제거리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여러가지 種類의 서비스중 國別로 理解가 다르고 利害가 대립하는 것은 공급자가 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이동해 가야 하는 단거리서비스에 한정되고 있다 하겠는데, 종래의 관행에서는 다른 나라이 가서 단거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유제량성이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비스交易의 自由化問題는 사실상 단거리서비스의 異國에서의 提供問題로 되고, 이것은 다시 異國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設置하는 權限(right to establish)의 問題로 다시 置換된다.

異國에서 단거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려면 서비스生產設置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中間投入物 뿐만 아니라 勞動과 資本이라는 本源的 生產要素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本源的 生產要素란 종래의 國際貿易의 대상에서는 排除되어 있었던 것이다. 財貨만이 국제적으로 교역되면 죽었고, 労動이나 資本이 교역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비스의 交易을 단순한 재화의 교역의 延長으로만

볼 수 없는 소이가 다시 발견된다.

資本의 國際的 移動이란 國際的인 投資 및 資本移動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財貨의 交易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또 勞動의 國제간 이동이란 각국의 移民政策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서 政治·文化的 要素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資本이나 勞動의 國제적 교류의 문제는 재화의 교역의 문제와 次元을 달리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점을 보아 Grubel이 서어비스交易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資本과 勞動의 移動의 문제라고 이해한 데 대한 正當性이 있다 하겠다.

國際的으로 交易될 서어비스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核心的인 것들은 本源的 生產要素인 勞動이나 資本의 國際的 移動을 本質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나서 美國이 중시하는 서어비스業種을 다시 살펴보면, 그것은 勞動의 國際的 移動과는 거의 無關한 것 이면서 資本의 國際的 移動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情報·通信, 金融航空, 엔지니어링 등은 상당한 규모의 資本 및 그것과 관계되는 기술이 개재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美國은 이러한 종류의 서어비스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서어비스의 交易이 自由化되게 되면 이들을 많이 輸出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생각의 타당성과 그것이 미처 감안하고 있지 못하는 사정도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서어비스交易의 比較優位는 어떻게 決定되는지를 알아본다.

5. 서어비스生產의 比較優位

서어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財貨를 생산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生產者로부터 中間投入物을 購入해야 하고 또 資本이나 勞動과 같은 本源的 生產要素를 投入해야 한다. 또 이러한 각종 投入要素를 最善의 方法으로 結合하기 위해서 적절한 技術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中間投入物이란 궁극적으로는 本源的 生產要素와 기술로 置換될 수 있는 것이므로, 技術에 있어 國別로 差異가 없다고 하면 어떤 서어비스에 대한 비교우위는 혼서·올린 모델이 提示하듯이 그러한 서어비스生產에 集約的으로 使用되는 生產要素를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지니는 나라에 있게 된다. 나아가 기술수준이 상이하다면 그러한 기술격차가 비교우위의 양태를 수정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 어떤 生產要素의 賦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를 크게 節約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기술을 감안하고 난 다음 주어지는 生產要素의 實效賦存(effective endowment)은 오히려 풍

부한 것으로 되어, 이러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生產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힉셔·울린모델에서는 資本과 勞動이라는 두가지 生產要素를 전제로 하여 國別로 비교우위가 어떻게決定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그야말로 論理的訓練을 위한 것이며, 生產要素를 두가지로 限定한다는 것으로부터 여러가지 어려움과 制約이 따라온다 함은 잘 알려져 있다. 서비스와 같이 多岐한 經濟客體에 대한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데 자본과 노동이라는 二要素의 論理體系를 활용함이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여러가지 制約을 시현하게 될 것임은 自明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要素의 區分體系가 필요하겠는데, Grubel은 서비스의 비교우위의 판정을 위한 要素의 區分으로서 金融資本(financial capital), 人間資本(human capital), 知識資本(knowledge capital), 文化資本(cultural capital)을 提示하고 있다.

아울든 國別로 이러한 生產要素들의 부존이 각기 상이할 것이고, 또 서비스별로 이러한 것중 어떤 要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가 규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종류와 국별 要素賦存에 따라 서비스 交易의 패턴이 대체적으로決定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知識資本의 所有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터이기 때문에 지식자본을 집약적으로 필요로 하는 情報서비스의 生產과 供給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태리나 로마 등 歷史的 遺蹟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文化資本을 지속적·집약적으로 필요로 하는 觀光서비스의 供給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 이러한 分類는 二要素의 體系보다 서비스의 生產·交易의 패턴을 보다 잘 說明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하여 이러한 四要素의 分類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이는 위의 要素들이 결코 同質的인 것이 아니며 특히 人間資本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을 여러가지로 더 細分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資本은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혼히 쓰여온 대로 熟練勞動과 未熟練勞動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숙련노동도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더 세분될 수 있다. 또 労動은 그것에 대한 對價인 賃金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숙련노동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나아가 個別勞動者들의 平均的 숙련도와 관계없이 여러 労動者들이 서로 協力하면서 복잡한 과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労動의 組織에의 歸屬性 여부가 고려사항이 된다. 각개 노력이 分散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目標에

지도되어 一貫的 體系를 이루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知識資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製品이나 生產工程 또는 販賣方法을 革新해 내는 企業家能力, 첨단의 科學技術知識에 의해 새로운 物品 기타를 發明해 내는 發明家能力, 人間資本을 效果的으로 組織하는 組織能力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를 각각도 다시 여러가지 서비스業種中 어떤 특정한 서비스業種과 관련하여 특히 有用한 것인가가 區別될 수도 있다.

서비스 國際的 交易이 불가피하게 生產要素의 國際間 移動의 메카니즘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과, 서비스의 生產에 필요한 生產要素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에 대해 어떤 한 나라만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나면, 美國이 서비스의 自由로운 交易을 目標로 하고 다른 나라에게開放을 요구한 서비스業種은 지나치게 한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知識資本을 核心的인 投入要素로 하는 서비스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반면에 未熟練勞動이나 속련노동을 주된 투입요소로 하는 서비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外面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年代中 中東에서의 建設서비스, 1960年代中 美國에서의 第三世界 出身 醫師들에 의한 의료서비스 등은 美國보다 知識資本을 떨 가지고 있으나 훨씬 풍부한 人間資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美國의 人間資本 보다 저렴한 가격을 주고 活用할 수 있는 나라(특히 人間資本이 풍부한 開發途上國)에게 상당한 부분의 서비스業種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나아가 서비스의 國際的 交易을 自由化하려고 하면 知識資本이 集約的으로 쓰이는 서비스業種 뿐만 아니라 人間資本이 집약적으로 쓰이는 서비스業種도 交易되도록 되어야 하며, 특히 後者를 위해서는 永住目的은 아니나 상당한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生活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⁴⁾

작금 美國은 이러한 制度가 移民政策과 관련된다는 것, 또는 經濟이상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듯 하나, 미국의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가 서비스交易의 自由化 推進에 있어 美國의 限界를 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서비스交易의 實形內容이 현재의 내용으로부터 더욱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6. 서비스交易의 基本規則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서비스交易을 규율하는 규칙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가 다음의 문제가 된다. 특히 財貨의 交易과 관련되어 현재 널리 인정되어 있는 규칙인 최혜

(4) Bhagwati는 이러한 제도와 관련하여 temporary-factor-requiring visa의 필요성을 시사·제안하고 있다.

국조관(most favored nation clause; MFN)과 自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및 相互主義(reciprocity)가 서어비스交易에 대해서도 延長・適用되어야 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서어비스가 자유로이 交易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國家別로 差別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우선 MFN이 인정되어야 하겠음은 수긍된다. 다음, 서어비스의 自由로운 交易에 따라 自國에서의 非效率的인 서어비스供給을 外國으로부터의 效率的인 서어비스供給으로 代替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自國民待遇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도 인정된다.

그러나 相互主義와 관련하여서는 問題가 없지 않다. 종래 財貨의 交易과 관련된 GATT의 규칙에서는 MFN과 自國民待遇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GATT의 會員國 사이에 經濟力의 差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同一하지 않는 것을 “同一하게 취급하는 것은 不公定하다(equal treatment of unequals is unfair)”는 인식을 근거로 하여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대 내지 양해사항을 制度化해 놓고 있다. 이로써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出發點이 상이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겠는데,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사이의 상호주의란 이러한 출발점으로부터 서로가 조금씩 자유화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즉 限界的 相互主義(marginal reciprocity)가 팬행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다가 근년 미국이 막대한 무역수지적자를 갖게 됨과 더불어 이러한 限界的 相互主義가 부인되고 交易에 있어 무역당사국의 서로同一한 처지에 있게 되도록 출발점을 수정한 다음 자유화의 길을 가야한다는 이른바 總體的 相互主義(full reciprocity)가 주장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先進國과 開途國 사이의 根本的 差異는 外面되고 貿易去來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에서의 制度를 後進國도 모두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된다.

GATT에서 최초에 限界的 相互主義가 사실상 동의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렇게 상호주의가 總體的 相互主義로 變質되게 되면 同一하지 않은 것을 同一하게 취급하는 不公定을 범하게 된다. 이러한 不公定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지만, 특히 서어비스와 관련하여서 특히 심각한 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어비스生產에 있어서의 公共性, 外部經濟性, 獨寡占市場의 가능성 등 때문에 서어비스市場은 本來의으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 데, 이러한 서어비스產業에 대한 規制란 본래 國別로 큰 差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서어비스 規制體系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總體的 相互主義가 강요되게 된다면, 각국의 서어비스 規制體系가 궁극적으로는 同一하게 되게끔 바뀌어야 하겠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이러한 原理를 따르면서 각국의 서어비스產業의 規制에 대한 規則을 서로 調和되도록(harmonization of regulation) 조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과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어비스의 交易에 대한 統一된 규칙을 정립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國際的인 交易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통일된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인 서어비스의 交易이 행해질 것이며, 이때 각국에서는 美國과의 雙務協商을 통한 內容確定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서어비스交易에 대한 根本原則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は 國際的인 約束을 정립해 나아가는 데 一役을 해야 할 것이다. 同時에 국제적 약속이 단시일내에 성립되기 어렵다는 實際的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自體로서 서어비스產業을 어떠한 順序와 速度를 가지고 開放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開放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미리 강구해 두어야 할 것 같다.

II. 서어비스 開放化에의 對應

1. 不確實한 狀況에서의 대응

서어비스交易에 의한 當事國 모두와 利益을 實現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沉世界的 서어비스交易의 規則이 決定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雙務協商을 통한 美國의 요구에 응해 우리 서어비스市場을 開放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 經濟의 對應이란 본질적으로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망을 수용하여야 하고 서어비스交易이 擴大되게끔 움직여 나아가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開放이 우리의 經濟發展에 도움이 되게(적어도 害는 되지 않게) 되도록 서어비스의 開放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떠한 方法으로 서어비스 交易의 自由化를 추진해야 最善의 結果를 얻게 되겠는가가 당면한 課題로 되는데, 이러한 課題에 대해 적절한 답을 탐색하는 方法으로서 여기에서는 南美諸國에서의 經濟自由化 過程을 살펴보고 그곳에서의 教訓을 찾아서 서어비스 開放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삼아보려고 한다. 南美諸國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開發途上國이며 또 外債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다. 이들은 經濟發展을 폐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性格의 발전전략을 시도하였고, 그 중에는 經濟自由化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이들이 經濟自用化를 시행함으로써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며, 서어비스交易의 自由化는 經濟自由化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그 強度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여러가지의 經濟自由化조치를 실시하고 中斷하기도 한 이

나라들은 지난 해 10월의 우루과이·라운드會議에 임하여 서어비스自由化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南美 몇 나라에서의 經濟自由化를 살펴 본 다음에는 이들 나라들의 서어비스自由化에 대한 입장은 살펴 보고 그것이 각국이 경험한 經濟自由化한 成功 또는 失敗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추측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서어비스開放과 관련된 입장을 평가하고 서어비스開放을 해 나아가려 할에 있어 유의해야 할 點과 구체적 결차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2. 南美에서의 經濟發展과 經濟自由化

(1) 經濟發展略史

資源富國으로서 南美諸國은 전통적으로 天然資源등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輸出品을 輸出하여 왔다. 代表의인 예로서 아르헨티나는 農產物을 수출하면서 外換을 벌고 所得을 증대시키는 輸出主導成長을 꾀해 왔는데, 이때 지배하는 經濟論理는 靜態的 比較優位의 原理이었다. 그러다가 1927년 美國이 아르헨티나農產物이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輸入을 中斷하게 되자 輸入代替의 必要가 나타나게 되었고, 原資材나 機械類에 대해서는 낮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關稅를 부과하는 方式으로의 輸出制限이 시작되었다.

브라질은 外貨調達을 주로 커피輸出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꾸준히 輸入代替도 꾀해 왔다. 특히 第一次 世界大戰을 기연으로 하여 消費財의 生產에 있어 상당한 輸入代替를 이루었다.

칠레도 銅과 초석을 수출하면서 成長하다가 第一次 世界大戰으로 輸入이 방해받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國內에서 製造業 生產能力을 상당히 늘리게 되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칠레는 각종 輸入品에 대해 최고 35%에 이르는 關稅를 부과하였다.

1914~29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 이들 라틴 아메리카의 代表國家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소간의 輸入代替가 이루어져 왔으나, 國際貿易에 대한 큰 추세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거나, 자연조건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지는 一次產品을 生產하여 輸出하는, 이를바 비교우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때 이런 나라들은 一次產品의 輸出과 더불어 상당한 所得의 成長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그것과 대응하여 다양한 工產品을 消費하게 되었는데, 工產品에 있어서 消費와 國內生產 사이의 격차는 輸入에 의해 총당되었다.

그러다가 불어닥친 世界恐怖에 따라 이를 국가들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각국에서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輸出이 줄어들었고 輸出價格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輸出價格의 下落이 輸入價格의 下落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交易條件도 惡化되었다. 더구나 그

이전까지 있어 왔던 資本의 流入도 크게 줄어 들었다.

이때에는 南美밖의 다른 나라들도 총수요의 감축을 피하고자 하여 보호주의적인 貿易政策을 취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남미제국들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變身하지 않을 수 없었다. 内的으로는 수요확대정책을 택하고 外的으로는 輸入을 統制하면서 外換統制도 병행하였다. 그 이전까지 택해 왔던 金本位制度를 폐지하고 消費財의 輸入과 관련하여 쿼터제를 일부 도입하고 關稅를 신설하거나 높였으며, 複數換率制度도 채택하였다.

輸入代替產業은 이러한 무역정책에 의해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粗稅 및 金融側面에서도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輸入代替產業에 있어 民間投資가 크게 늘어 났었고, 그러한 투자를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는 公共投資도 크게 擴張되었다.

이때 있었던 일로서 유의할 점은 1933년말에 이르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外債에 대한 元利金의 債還을 中斷하였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債權國이 英國이 있고 英國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중요한 輸出市場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원리금 상환을 쉽게 중단하지는 못하였다.

金本位制度를 폐지하고 輸入代替와 內需擴大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들 國家들은 均衡財政의 原理를 신봉하고 있었다. 赤字財政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을 극히 우려하였기 때문에 內需擴大를 목적으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粗稅를 중대시켰고 혹은 政府支出(특히 公務員의 賃金)을 감축시키기도 하였다. 財政活動과 관련하여서는 이때까지 古典的인 均衡財政觀이 살아 있었다.

이러한 政策의 結果로서 1931~40년에 있어 南美諸國은 4%內外의 經濟成長率을 시현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先進國들의 상황보다 나은 것이었다. 이때 이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製造業이었으며, 建設業과 서어비스業이 一次產業을 앞서 제조업을 따랐다.

內需擴大와 保護貿易政策으로 상징되는 國內中心의 政策은 남미제국에 대해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날 무렵까지 상당한 정도의 공업발전과 外換保有高를 가져다 주었다.⁽⁵⁾ 공황과 第二次世界大戰이라는 충격을 겪더 나감에 있어 국내중심의 이러한 經濟政策은 크게 보아 成功的이었다.

그러나 輸入代替產業의 成長은 이러한 산업을 응호하는 利益集團을 배출시키었다.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나고 다른 곳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경쟁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南美諸國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이 關稅와 複數換率制度를 주된 수단으로 하는 輸入代替政策을 지속하도록 作用하였다. 輸入代替政策이 계속되는 이면에서 輸出이 정체되고, 資源이 非效

(5) 外換保有高의 增加는 戰爭期間中 나타난 商品市場의 호황에 주로 연유한다.

率的으로 配分된다는 점이 看過되었다. 이러한 輸入代替政策의 고수는 南美 삼각뿔의 三國인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에서 특히 심했으나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第二次世界大戰後 다른 나라가 점차 交易自由化的 方向으로 움직여 가자, 이것이 南美的 각 나라에서 輸出을 抑壓하고 輸入代替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과연 合理的인가 하는 것을 의문시하도록 하는 계기로 되었다. 農產物과 鑛產物을 輸出하는 측에서는 그들에게 불리한 交易體制를 是正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요구 내지 輸入代替戰略의 是正是 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理由로는 아래의 두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輸出擴張을 지지하는 利益集團은 保守地主들이었던 바, 이들이 당시 세력을 확장해 가는 民衆勢力(populist) 내지 都市의 勞動者階層에 의해 압도되었다. 이들 後者가 輸入代替政策과 연관된 製造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보수지주들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둘째, 學界에서의 論議에서도 輸入代替戰略이 승리하였다. 이때 프레비쉬와 그를 따르는 經濟學者들은 제조업제품에 비해 일차산품의 交易條件이 추세적으로 悪化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 動態的으로 經濟發展을 지속시키는 원천이되는 外部經濟性(dynamic externalities)은 製造業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製造業生產을 확충할 수 있게 하는 輸入代替戰略을 지지하였다.

輸入代替戰略의 실현수단은 國內的으로 相對價格을 一次產品에 不利하게 하고 二次產品에 유리하게 하는 각종 政策들이었다. 특히 貿易政策이 널리 동원되었고 鐵鋼, 石油, 化學 등 分野에서는 公企業形態를 취한 정부의 直接투자도 있었다.

輸入代替戰略 아래에서는 通貨의 高平價, 높은 關稅와 非關稅障壁이 생겨났고 관료조직의 비능률등 歪曲이 스며들었다. 資源分配은 效率的이지 못하였고, 生產物市場과 生產要素市場이 거의 모두 경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輸入代替를 위한 原資材와 資本財의 輸入이 차라리 증가하게 되었다.

輸入代替戰略을 택했던 南美國家들이 1950年代後半과 1960年代初에 통상적으로 경험한 어려움은 國際收支 不均衡과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構造主義(structuralism)의 치방이 이때를 특징지웠다. 이 치방은 經濟發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투캡모델에 따라)貯蓄不足보다 外換不足때문이며, 外國으로부터의 援助가 경제성장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은 通貨供給이 과잉이기보다는 여러가지 構造的 歪曲아래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補正의 通貨供給(accomodating money supply)을 지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國際收支 不均衡과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經濟發展을 이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投資計劃이 中心이 되는 經濟計劃(economic planning)을 집행하는 한편 보다 擴大된 次元에서 大規模生產의 이익을 누리게하고 輸入代替工業化를 가능하게 하는 地域協力を 피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地域協力에 따른 國別 產業配置는 관련 국가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았고, 근본적인 輸入代替戰略 아래에서 經濟活動이 效率的으로 組織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계획도 큰 성과를 낼 수 없었다. 한편 1960年代末에 들어와서는 學問的으로 輸入代替戰略과 輸出主義型戰略이 Bhagwati, Kreuger, Balassa 등에 의해 比較研究되었으며 後者가 開途國의 經濟成長을 가져오는 데 있어 훨씬 效果的인 方法이라고 주장되었다. 이에 따라 輸入代替戰略을 지양해 보려는 努力이 南美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經濟自由化의 企圖로 나타났다. 輸入代替戰略과 결부되어 政府의 干與가 심했고 그에 따라 시장메카니즘이 올바로 作動하지 못했던 것을 是正하여, 經濟의 活力を 民間의 창의적 經濟行爲에서 찾아 보려고 한 것이 政府의 간섭을 극소화하고 市場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려는 다른 극단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經濟自由化

1960年代 南美에 있어서의 經濟自由化는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市場機能을 활성화하고 輸出의 채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브라질은 輸出稅를 없애고 低換率政策을 지양했으며, 輸出金融制度를 도입했다. 財政赤字를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資本市場을 발달시키며 資金連動化裝置를 없애 實質賃金의 下落을 유도하였다. 브라질의 이러한 自由化方向으로의 움직임은 1960年代 後半 아르헨티나의 Onganía 行政府, 칠레의 1970 行政府에 의해 모방되었다.

이러한 自由化조치 이후 이들 나라에서는 經濟成長率이 높아졌고 輸出도 증대되었다. 이 때의 經濟自由化的 核心은 貿易自由化이었는 바, 한편으로는 輸出을 장려하는 갖가지 유인을 부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輸入을抑制하는 關稅를 낮추고 비관세장벽도 완화하였다. 이러한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해 輸出이 신장되면서 고용도 늘어났고 특히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 들었다.

그리다가 1970年代初 汎世界的 인플레이션, 石油派動과 더불어 이들 지역에도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南美의 南端의 삼각뿔三國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經濟成長도 劣悪했는데, 이에 대한 反動으로서 軍事政權이 들어서면서 이들 三國에서 貿易自由化를 훨씬 능가하는 包括的 經濟自由化가 1970年代 後

半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의 어려움의 原因으로서는 (i) 外換不足, 財政赤字 등에 기인하는 심한 인플레이션 및 그에 따르는 國際收支赤字라는 巨視的 不均衡과 (ii) 價格統制, 關稅, 퀴타, 補助金등에 기인하는 각개 市場에서의 微視的 歪曲이 적시되었다. 政府에 의한 財貨市場과 生產要素市場에의 介入이 이러한 資源配分의 非效率과 財政赤字 및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財貨市場과 要素市場에서의 規制緩和가 다른 무엇보다 강조되었고 그를 위해 貿易과 資本去來의 自由化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自由化조치의 강도는 칠레에서 가장 철저했고, 그 다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차례이었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自由화의 내용과 순서는 다소 상이하였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하여 財政赤字를 축소하고 通貨緊縮을 단행하였다. 재정적 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財政支出을 一律의으로 줄이는 한편 稅收를 늘이기 위한 稅制改革도 단행하였다. 이러한 긴축정책은 總支出이 줄어들게 하여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失業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치뤄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의 적자는 여전했으므로, 支出縮少政策에 더하여 支出轉換政策(expenditure switching policy)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平價切下가 단행되었고, 輸出稅와 輸入關稅가 축소되었다.

經濟自由化의 가치 아래 시행된, 이러한 支出縮少政策과 支出轉換政策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效果의이었으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率이 상당히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절대수준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높았다. 칠레에서는 종전 年平均 300%內外이던 인플레이션率이 80%內外로 되었고, 우루과이에서는 年平均 70%내외이던 인플레이션率이 50%로 떨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인플레이션率이 年平均 200%를 계속 상회하였다.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率이 충분히 下向調整되지 않는 理由는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下向調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豫想值의 下向調整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위 “타브리타(tablita)”라고 부르는 平價切下의 事前豫告制가 실시되었다.

購買力平價說에 의거할 때, 貿易自由化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떤 나라의 인플레이션率은 國際的 인플레이션率에다 平價切下率을 합한 것으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國內의 인플레이션率을 낮추기 위해서는(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내의 인플레이션율이 外

生的인 國際인플레이션率과 큰 격차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平價切下의 정도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성을 획득하면 된다. 어떤 일정한 정도 이하로 평가절하될 것이 널리 인정되는 한 국내의 인플레이션율은 국제인플레이션율에다 이러한 평가절하예상율을 합한 것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율을 어떤 범위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換率이 어떻게 變更될 것인가에 대한 國民들의豫想을 一定한 범위내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平價切下의 計劃을 사전에 공고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換率을 그렇게 미리 公告한 水準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努力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結果, 換率이 미리 공고된 것과 같다는 사실이 점차 널리 인지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의豫想值를 이미 공고된 것과 같게끔 修正할 것이고, 이로써 換率의 變化에 대한 信賴를 획득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

微視的 次元에서 價格統制를 폐지하고 利子率을 自由化하였으며 勞動市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다. 세나라 모두에서 國內金融市場에 대한 규제를 거의 폐지하였다, 國際的 資本移動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였다. 前者와 관련하여서는 利子率上限制를 폐지하였고 金融仲介機關의 運營 또는 設立에 대한 간여도 축소하였다. 後者와 관련하여서는 우루파이가 1974년에 私的인 資本移動을 완전 자유화하였고, 아르헨티나는 1979년에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조치를 거의 철폐하였으며, 칠레는 中長期資本의 資本導入에 대한 제한을 1979년에 철폐하였으나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1981년에 가서나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를 세나라 모두에서 勞動市場은 自由化의 對象에서 제외되었다. 노동력을 해고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고 賃金도 連動化 장치에 따라 決定되었다. 勞動組合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이 노동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화라면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었다.

이러한 經濟自由化의 過程을 볼 때 南美經濟自由화의 核心은 貿易自由化였고, 資本自由化가 이것을 앞서거나 뒤로면서 貿易自由化를 補完하였다. 서어비스自由化는 별 關心거리가 아니었다.

貿易自由화와 資本自由화 중 어느 것을 먼저 시행했느냐 또는 동시에 시행했느냐에 있어 三國 사이에서는 差異가 있었는데, 이하 이점 을 經濟自由화로부터의 教訓을 찾는 부분에서 검토해 보자.

3. 南美 自由化經驗으로부터의 教訓

貿易自由화와 資本自由化를 피해 나감에 있어 삼각뿔의 三國은 서로 다소 달랐다. 우루파이는 일찍부터 資本去來에 대한 제한을 모두 철폐하고 商品價格에 대한 統制도 없었으나

貿易自由化에는 보수적이었다. 이와 반대로, 칠레는 무역자유화를 먼저 시작하였으나 資本去來는 늦게 長期資本과 短期資本의 순서로 限定的으로 自由化시켰다. 아르헨티나는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큰 시간차이를 갖지 않고 시행하였으나 이들 모두에서 약간의 유보 사항을 남겨 다른 두나라보다 덜 철저한 自由化를 폐하였다.

이들의 自由化過程을 比較論議한 결론은 貿易自由화와 資本自由화에 관계된 對外去來自由化的順序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를 먼저 시행하고 그 연후에 資本自由化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었다.⁽⁶⁾ 그 첫번째 理由는 資本市場의 적응속도(speed of adjustment)가 實物市場의 적응속도보다 크게 빠르다는 데서 연유한다. 資本自由化를 먼저 시행하거나 무역자유화와 同時的으로 시행하게 되면 國際收支는 資本收支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데, 종래 金融·資本去來가 억압되어 있던 상태에 있다가 自由화가 시행되면 큰 資本流入이 있게 되면서 實質換率이 下落하게 되고, 이러한 實質換率의 下落은 實物部門과 관련하여 輸出의 競爭力を 상당히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資本去來가 正當한 가격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實物部門에 있어 自由화가 미처 완성되어 있지 않아 財貨價格이나 要費價格이 歪曲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所得도 歪曲된 것일 수 밖에 없는데, 資產의 去來價格이란 이러한 歪曲된 所得의 흐름의 現在價值에 상당할 것이요, 이에 따라 資本去來로 歪曲된 價格體系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理由는 輸出과 輸入 중에는 後者가 더 빨리 적응한다는 점과 관련되고 있다. 貿易自由化를 먼저 실시하여 輸出이 늘어나고 不當한 輸入代替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資本自由化를 해서 資本流入이 되고 나면, 그것이 輸入을 增大시키어 貿易收支를 크게 惡化시키게 되고 그로써 차후에 貿易自由化를 시도할 소지를 없애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貿易自由화나 資本自由화와 같은 對外去來自由化를 시행함에 있어 이들의 先後를決定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對內的으로 먼저 상당한 정도 自由화를 달성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自由화의 궁극의 목표는 實物部門의 生產能力을 증강하고 實物部門의 效率性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對外去來自由化란 이러한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데 활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手段은 되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케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못된다. 實物部門의 效率性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實物部門이 경쟁적으로 지탱되게끔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實物部門에서 價格메카니즘이 作動하는 것을 막는 갖가지 價格統制가 있어서

(6) 이러한 結論을 지지하는 입장은 참고문헌에서의 V. Corbo, J. de Melo, T. Tybout(1986), S. Edward(1985), J. Frenkel(1982) 등이다.

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對外去來의 自由化를 成功的으로 이룩해 나가려면 對內的으로 財貨市場에서 상당한 自由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려한 財貨市場을 밀받침하고 있는 要素市場에서도 경쟁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勞動市場에서 價格시그널에 따라 勞動의 部門別 移動이 있게 되어야 하고 賃金의 上下方伸縮性이 존재하여야 하며, 資本市場에서도 利子率이 경쟁적으로 決定되게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勞動組合을 가지고 있는 南美의 傳統에서는 賃金과 払傭水準이 모두 상당히 경직적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賃金連動制 때문에 임금의 上向調整은 다소 용이했다. 實質賃金을 줄일 수 있는 方途는 인플레이션뿐이었다.

한편, 資本市場에서 利子率은 낮게 억압되었고 信用의 配給이 행해졌다. 낮은 預金利子率에서 작게 동원된 저축이 낮은 貸出利子率에서 특정 企業에 대여되었다. 이러한 性格을 가지는 要素市場을 自由화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課題이었다.前述한대로, 세나라중 어느 나라도 勞動市場의 自由화를 劇策하지는 않았다. 政治的 고려에 의해 決定되는 名目賃金의 上向調整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實質賃金의 下向調整에 勞動市場에서의 價格이 좌우됨을 방임하였다.

金融部門의 自由화와 관련하여서는 한꺼번에 利子率을 自由화하고 새로운 企業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金融의 自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음을 留意하기는 하였다. 종래 은행들은 낮은 利子率에서 그들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는 企業에 信用을 配給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의 이면에서 특별한 인연은 없으나 보다 收益性이 높은 企業들은 資金을 미처 빌리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利子率이 自由화되면서 利子率이 上昇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에도 금융기관들은 즉각 貸出先을 전환하지 못하였기에 貸出중 잘못된 것의 잘못된 정도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또 貸出利子率과 預金利子率를 同時に 자유화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규모의 貸出을 종전의 낮은 利子率에 하고 있던 기존 銀行에게 損失을 안겨 주었고, 그로써 새로이 참여하여 새로이 貸出을 하는 은행에 비해 劣等한 위치에 서게 하였다.

급격한 金融의 自由化로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是正하게 하는 方法의 하나는 먼저 貸出利子率을 自由화하여 기존 은행들이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 預金利子率을 자유화하는 것이 되겠고, 기존의 貸出을 갖고 있는 은행과 새로 참여한 은행사이의 衡平를 고려하는 것도 이면에 있어 도움이 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의 自由화를 기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참고되어야 하겠다.

또 잘못된 貸出로 인해 惡性資產을 가지고 있는 銀行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사실상의 保證(de facto insurance)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을 해 온 은행을 더욱 방만하게 경영하도록 하여, 이른바 도덕적 타락(moral hazard)에 몰고 가게 되는 점도 경계되어야 하겠다.

財貨市場을 自由化하고 要素市場을 自由化함은 微視的 次元에서 올바른 相對價格體系를 정립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이러한 微視的 次元의 가격조정이 근본적으로 혼들리게 될 수가 있다. 심한 인플레이션은 價格機構의 情報傳達機能을 마비시키거나 약화시키며, 특히 長期投資 보다 短期投資에 매달리게 하는데, (後者는 投機性이 크나 前者は 生產力を 증대시키는 것이 되기에) 이것이 實物部門의 長期的 成長의 기반을 弱化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일단 어떤 수준에 이르고 나면 인플레이션의豫想을 매개로 相乘作用을 하며 지속되기 쉽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정지시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豫想值를 引下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通貨供給을 적당한만큼 줄이고 財政赤字를 회피하는 등 巨視政策手段을 安定化 方向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平價切下豫告制처럼 長期的으로나 타당한 原理만 맹신하고, 사람들이豫想值를 형성하는데 참고로 삼는 巨視經濟變數의 움직임을 外面한다면, 사람들은 巨視的 安定化政策의 의도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安定化政策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豫想值가 별로 下向調整되지 않고 그로써 실제의 인플레이션率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名目賃金이 인플레이션率만큼 상승하지 못한다면 實質賃金의 下落이 따라오고, 名目換率의 平價切下가 인플레이션率에 상당하지 못하다면 實質換率의 下落이 따라온다.

그런데 實質賃金의 下落이란 한편으로는 低所得階層의 所得分配分을 위축시키어 所得分配狀의 惡化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계층의 支出을 줄임으로써 總需要의 감축을 가져와 종국적으로 경기침체를 가져온다. 實質換率의 下落도 輸出의 채산성을 억압하여 輸出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貿易收支의 惡化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總需要의 감소를 통한 경기하강의 요인이 된다.

경기침체 및 그에 대응하는 失業의 社會的 費用이 매우 큰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實質賃金의 下落이나 實質換率의 下落은 가능한 한 회피되어야 할 대상이다. 나아가 신뢰받지 못하는 安定化政策의 무조건적인 집행이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다 함을 상기할 때, 안정화정책의 집행은 要素市場이나 外換市場에서의 價格變動의 움직임과 상응하게

끔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상응성은 安定化政策과 平價의 調整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때 보다 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經濟의 自由化란 對外去來의 적용뿐만 아니라 對內의 財貨市場의 適應, 要素市場의 適應과 발을 맞추고 또 通貨量 및 財政赤字 등과 관련된 巨視變數들과도 平衡性을 이루게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하겠다.

요컨대 南美의 經濟自由化 實驗은,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自由化를 그 順序나 速度에 있어 잘못 시행했다가는, (i) 金融部門의 마비, (ii) 金融部門의 實物部門에 대한 副作用——경기침체 및 所得分配面에서의 惡化, (iii) 도덕적 타락상과 자본도피 등의 끔찍한 結果를 맞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經濟自由化를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 내지 폐해를 회피하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4. 南美 몇 나라에서의 서비스自由化에 대한 입장

이상에서 브라질은 貿易自由化를 일찍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資本自由化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反面, 아르헨티나등 삼각뿔 三國은 資本自由화까지 실현해 보았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상에서는 이들 나라의 서비스自由化에 대한 입장이 明示的으로 밝혀져 있지 않았다. 經濟自由化를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이들 나라에서는 서비스自由化가 獨自의 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무슨 이유때문에 이들의 經濟自由化過程에서 서비스自由화의 問題가 이렇게 考慮外로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한가지 形式的 대답은, 이들 나라에서 經濟自由化가 집행되던 때인 1983年 以前의 時點에서 보면 서비스自由化란 아직 심각한 문제로 인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다. 서비스交易의 自由化에 관한 論議는 1974년부터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學問的 關心을 끈 것은 1985년부터였고 모든 나라에서 논의의 초점으로 된 것은 1986년 10월 우루과이·라운드를 前後해서 財貨의 交易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서비스의 交易에 관한 문제도 다루기로 사실상 合意한 이후부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形式的 理由보다 훨씬 重要한 것은, 브라질과 같이 자신이 豫定한 바에 따라 貿易自由화의 길을 밟아 가고 있는 나라는 서비스의 自由化를 時期相早라고 여겼다는 것이고, 이미 서비스自由化 보다 앞선 資本自由화까지 실시해 본 삼각뿔 三國에게는 주요 서비스業種은 이미 自由化된 상태이었기에, 서비스의 自由화가 하등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쟁점이 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1986年 서비스交易에 대한 一般原則을 決定해 보자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각종 준비토의가 진행되게 되자, 이들 국가들은 서비스自由化가 당시 外債問題가 경

기침체등 기타 經濟內部問題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나라에게 별 도움이 못된다고 판단하여 서어비스 自由化를 향한 美國의 주장에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인도와 함께 소위 強硬開途國의 代表가 되어 美國의 입장과 가장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하 최근 입수 가능한 資料를 통하여 이들 나라의 입장을 살펴 보기로 한다.⁽⁷⁾

우선 商品交易에 관한 GATT의 原則인 MFN과 自國民待遇가 서어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는 자국민대우를 하는 것이 기존의 법규와 저촉될 수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검토가 없이 자국민대우의 原則을 인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 나라는 서어비스 交易自由化의 贊否에 앞서 이를 계기로 術技移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商品交易에 있어서 開途國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음으로써 先進國과 開途國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칠레는, 서어비스交易과 관련하여서도 開途國優待條項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요망이 올바로 반영되지 않는 한 칠레는 서어비스交易에 대한 協定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서어비스交易에 관련되어 總體的相互主義은 곤란하고 限界的相互主義가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예는 이들 나라가 서어비스自由化에 대한 一般原則을 정립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個別 서어비스業種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확정하는데까지는 아직 진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의 실제를 보면 오늘날 서어비스交易의 핵심부분으로 인정되는 서어비스業種에서 이들 나라들은 별색 상당히 自由化를 실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外國銀行과 保險會社들이 이들 나라에 진출하여 預金을 받고 보험서어비스를 팔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資本自由化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 삼각뿔 三國에서는 海運이나 엔지니어링 서어비스를 自體的으로 供給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어비스를 이용하려면 그것을 공급하는 외국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自體的인 生產能力이 충분하지 않아 주요 實物部門에서의 經濟活動도 크게 外國의 多國籍企業에 의존하는 이러한 나라들은 財貨보다 無形的이고 外國企業이 거래하기가 용이하며 供給者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는 주요 서어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는 財貨供給에서의 의존 이상으로 多國籍企業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어비스開放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과 다른 經濟政策과의 調和를 모색하는 것이 별

(7) 서어비스協商과 관련되어 수집된 資料는 많으나 이중 대부분은 先進諸國의 입장은 수록한 것이 다. 開途國의 입장은 開途國一般으로서 統合되어 있으며 開途國 각각의 입장은 밝힌 資料는 宋泰準, “우루과이 리오드(UR) 協商구룹별 會議參席 出張報告書”(1987. 3. 7) 정도이다.

의미 없는 일로 인지 되었다.

그러나 資本自由化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外國人直接投資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해온 브라질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브라질은 스스로 상당한 大國이라고 여기고 있고 外勢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經濟發展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前述한 대로 情報產業과 컴퓨터分野에서의 開放要求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서비스交易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브라질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서비스貿易에 관한 多者間規制를 설립해 보자는 政治的 약속을 한 것 뿐이라고 보고, 이러한 약속이 지향하는 목표는 서비스交易의 擴大라는 中間目標(intermediate aim)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국의 發展(특히 開途國의 經濟發展)이라는 궁극적 목표(ultimate aim)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여긴다.

이 나라는 (i) 각국 정부의 서비스部門에 대한 規制는 主權의行使이기 때문에 국제적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ii) 比較優位原則은 資本과 勞動의 移動을 論外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交易은 資本과 勞動의 移動을 주요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商品交易에서 원용하여 서비스交易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iii) 서비스分野에서 외국회사에 설립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이들이 설립되었을 때에는 自國民待遇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投資를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것과 같아져, 40여년간 실시되어 온協定인 GATT의 내용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매우 커졌으나, 이들의活動을 규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것이 다국적기업의 母國과 그것이 活動하는 나라 각각에 대해 어떠한 利害得失을 가져 오는지가 不分明하고, 서비스와 財貨 사이의 關係및 經濟發展에의 기여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으로 商品交易에 대해 成立하는 규칙을 서비스交易에擴大適用하는 것은 잘못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課題는 서비스의 本質을 파악하고, 관련 統計를 정비하며 서비스交易擴大의 궁극적 목표에 달성을 수 있게끔 서비스交易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협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욕적이고 조심스럽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상품협정과 서비스協定을 서로 연계시키거나 非現實的으로 協商時限을 깊게決定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5. 開放의 執行

(1) 우리나라의 經濟自由化

우리나라의 經濟自由化는 1960年代初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을 꾀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輸出入許可制, 複數換率制, 高率의 關稅, 外換統制 등 國際交易을 自由롭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적지 않았는데,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하여 우선 輸出에 장애가 되는 여러 要因들을 제거함으로써 輸出自由化를 기도하였다. 國際市場에서의 경쟁에 장애가 되는 國內의 歪曲을 제거하여 수출이 신장되게끔 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 平價切下를 단행하였고 銀行에 대한 預金利子率을 대폭 높이는 限定的 의미에서 金利自由化도 한때 시행하였다. 수출용 원자재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이의 價格이 국제가격이상이 되지 않게끔 關稅와 間接稅體系도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輸出金融制度를 신설하여 輸出을 지원하였고,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韓國貿易振興公社(KOTRA)를 설립 운영하고 수출과 관련되는 社會間接資本을 建設하였으며, 철도·전기등의 使用料를 싸게 해 주는 등 輸出을 장려하는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輸出支援制度의 結果로서 輸出을 함께 있어 海外市場에서 겪게되는 不利한 점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輸出을 不利하게 하는 國내의 여러가지 要因이 식별되기만 하면 除去될 수 있었다. 그로써 輸出을 하는 것이 매우 自由로 왔다. 南美의 여러 나라에서 天然資源을 輸出하거나 農產物을 輸出하려 할 때 허가를 밟아야 하거나 輸出稅를 내야하는 등 자유롭지 못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輸出을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로웠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輸出自由化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게 輸出에 힘을 쓰더라도 여전히 貿易赤字를 갖고 있었으므로 사치품이나 불요불급품의 輸入이 없게끔 상당한 강도의 輸入制限이 시행되었다. 輸出의 장려와 더불어 輸入을 代替하는 것도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네가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이 예시하듯이 輸入自由化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輸入이 제한되어 이른바 輸入自由化는 실제화되질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輸出自由化, 限定의 輸入抑制 및 輸入代替努力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는 결국은 國내에서 財貨를 生產하는 能力を 提高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努力은 형식적으로는 輸出과 輸入과 같은 對外去來와 관련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國내의 實物部門에서 生產을 효율적으로 하고 國내 및 海外에(특히 海外에)效果적으로 販賣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經濟의 實物部門의 運營을 強化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다른 部門의 經濟活動은 이렇게 實物部門을 強化하는 데 공헌하도록 規制되어 왔다. 輸出金融制度는 輸出을 촉진하고 輸出品生產에 장애가 되거나 負擔이 되는 要因들을 제거하여 實物部門을 強化하는 要因이었지만, 그 자체로서는 政策金融의 一種으로 金融

部門이 價格에 카니즘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는 데 대해 한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經濟에서는 輸出自由化는 시행되었으나 金融自由化는 미처 시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外國으로부터 借款을 도입하는 것도 輸出과 直接 또는 間接으로 연관을 가지는 投資를 할 때 주로 허용됨으로써, 實物部門을 強化하는 데 기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자유로이 資本을 流入하거나 資本을 流出하는 것이 禁止되어 있었기 때문에, 資本自由化로 시행되지 않았다.

國內的으로 주요 서비스業種에서 進入이 統制되어 있고 價格의 변동도 허가사항이었다. 金融, 交通, 情報·通信 등 주요 서비스를 供給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서비스의 價格도 統制의 對象이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海外의 서비스 供給者は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서비스市場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예컨대, 銀行業의 경우 1967年 9개의 外國銀行 支店이 인가된 것을 효시로 하여 1986年末 現在 55개 金融機關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外國의 서비스 供給者が 進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차츰 그業務의 量과 幅을 넓혀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종래 서비스市場은 對外的으로는 밀할 것도 없고 對內的으로도 自由化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 經濟는 1985년 부터 美國의 通商法 301條와 관련되어 서비스市場의 對外開放을 강력히 요구받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고, 우루파이·라운드를 계기로 하여 서비스 交易問題와 관련하여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限定된 범위에서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2) 서비스 自由化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開途國의 一員인 우리나라서는 서비스交易을 自由화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生產하는 中間財로서의 서비스의 價格을 낮추는 正的인 效果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서비스自由化가 國家安保 또는 經濟의 自足性을 해치고 의존으로 이끌어가 經濟發展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負的인 效果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한편, 美國으로부터의 雙務的 協商을 통한 심한 압력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多者間規範을 제정하는 것이 서비스交易과 관련하여 점증하고 있는 雙務的 紛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다자간 규범의 제정이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보호주의적 경향도 완화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交易에 관한 協商의 原則으로서,

- (1) 다자간 규범체계는 開途國에 대한 우대조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 (2)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서비스부문, 즉 노동집약적 부문도 협상에 포함시키

고, 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勞動力의 國際的 移動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하며,

- (3) 安保나 유치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판(safeguard) 체계를 정비하고, 또 효율적인 분쟁 해결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 (4) 단시간내에 단안을 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問題의 本質을 잘 이해하고 많은 論議에 의해 結末을 얻게 되도록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協議해야 한다는 등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同時に 서비스交易이 자유화되더라도 국내서비스 供給者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국내 서비스業界를 強化시키고 效率化하게끔 유도하고 努力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서비스가 交易財化 되었음을 인지하고, 또 美國 등의 압력 때문에 서비스를 開放해야 하겠음도 이해하면서, 서비스를 開放하려 함에 있어 최선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의 協商原則을 協商구룹별 會議에서 밝히는 한편, 내적으로는 개별적 서비스業種의 경쟁력을 검출하고 서비스開放이 가져올 得失을 계산하여 서비스開放에 대한 태세를 정립해 보려고 하고 있다.

서비스를 開放하는 것이, 現在의 國內 서비스 供給者가 開放이후에도 계속 成長・存續할 수 있도록 하면서 實物生產部門을 전에 輸出自由化를 통하여 開放한 것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經濟를 강화하고 더 확고한 經濟發展을 보장하게 하는 전기가 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協商原則이나 기타 意圖하는 目標는 志向하는 目的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總論的 論議를 具體化하고 그러한 目標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各論的 조치는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韓國開發研究院 등 연구기관에서는 몇개 個別 서비스業種을 單位로 하여 서비스 交易政策 또는 서비스交易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貿易秩序下에서의 우리의 貿易政策은 어떠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研究와 補完의이 될 수 있게끔, 本研究에서의 서비스開放에 대한 대응방안을 提示해 본다. 이하에서는 특히 어떤 서비스의開放이 그 서비스部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部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注目하고, 또 서비스开放이 사실상 資本自由化의 길이 될 수 있음을 摘示한다. 잘못된 資本自由化가 가져오는 영향을 회피하려면 사실상의 資本自由化로 될 수 있는 우리의 서비스开放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南美諸國의 경험을 참고로 하며 생각해 본다.

(3) 서비스開放의 執行

우루파이·라운드 등 최근의 서어비스交易의 自由化에의 움직임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앞에서 제시된 協商의 一般的 原則을 더욱 보강하여 가며 서어비스의 多者間協商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美國과의 雙務協商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서어비스部門을 어떤 方式으로開放하여야 할지도 미리 강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흔히 經濟自由화의 課題는 自由화의 順序(order)와 速度(speed)를 어떻게 決定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로 代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어비스自由化로 서어비스業種중 어느 것을 먼저 自由화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自由화하는 문제와, 自由화의 順序가 決定된 다음 그것을 어여한 속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가. 自由化順序의 決定

앞에서 서어비스開放化와 관련된 理論的 考慮를 다룰 때 서어비스는 여러 種類가 있으며, 그러한 것 각각을 生產하는 데 있어 國別로 比較優位가 다를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 할진대 우리經濟의 서어비스業種중 自由화의 順序를 決定함에는 (i) 國家安保와 관련을 가지거나 外部經濟效果를 가지는 것을 가장 끝으로 둘리고, 그러하지 않는 것 중에서 自由화의 順位를 決定해야 할 것이고,

(ii) 그러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우리經濟에 比較優位의 潛在性이 있는 것을 먼저 自由화하고 幼稚產業에 해당되는 것을 나중에 自由화해야 할 것이며,

(iii) 消費者剩餘의 측면을 고려해서는 中間投入物로 쓰이는 것 보다는 단순히 最終消費財로 쓰이는 것을 먼저 自由화해야 할 것이다.

서어비스業種중 國家安保와 긴밀한 關係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財貨生產部門이나 서어비스生產部門에 큰 外部經濟效果를 가지는 業種을 국내에서 유지하고, 外國으로부터의 供給者의 態意的 行爲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함은 自明하기 때문에 더 이상 說明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음, 우리나라에 비교우위의 잠재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自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이런 業種이 궁극적으로 國際競爭을 이겨 나갈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자유화과정에서 의의의 사태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어비스生產을 위한 要素를 살펴볼 때 어떤 서어비스를 生產하는 데 集約的으로 쓰이는 要素를 우리 經濟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서어비스業種에 대해 비교우위의 潛在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業種은 그것보다 比較優位의 潛在性이 작은 業種에 비해開放에 따른 適應이 쉬울 것이며, 적용에 있어 큰 負擔도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의 잠재성이 있는 것을 먼저開放하는 이면에서 그러하지 않는 것도 다소간의時間을 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業種도 종국적으로는 國際競爭에 처하도록 해야 하며,開放에 처하여 다소간 여유있는 適應의 時間(adjustment time)을 허용받게 되는 데에 불과하다.開放의 順序와 速度에 따라 주어지는 適應의 時間 동안에 이러한 서비스業種은 技術을 導入하거나 새로운 技術을 창안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變身하거나, 그러한 서비스業種으로부터 이탈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비스自由化를 계기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生產業體는 存續하게 되고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 生產業體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달리 말하면, 기존의 서비스生産者를 그것의 경쟁력 또는 比較優位性에 關係없이 모두 보호한다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自由化的順序를 決定함에 있어, 앞에서 고려한 두가지 基準은 서비스의 供給側 事情을 주목하여 마련된 것이 있다. 이에 비해 세번째 基準은 서비스의 需要側 事情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다.

모든 서비스는 需要되게 마련인데, 수요곡선과 관련하여서는 消費者剩餘라는 厚生의 기준이 주어져 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많을수록 그러한 서비스의 自由로운 交易을 제한하여 서비스의 價格이 높아지게 함으로써 어렵게 되는 消費者剩餘의 褐생이 커진다. 따라서 다른 條件이 同一하다고 하면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한 交易의 制限을 먼저 해소하여 消費者剩餘의 褐생이 과다하게 됨을 防止하는 것이 必要하게 된다.

그런데 서비스의 수요와 관련하여 어떤 것의 수요가 특히 크다고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어떤 서비스의 需要란 實質的으로 決定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가 最終需要에만 쓰이느냐 또는 中間需要로도 쓰이느냐에 따라 대체적인 구분은 할 수도 있겠다. 최종수요에 비해 중간수요가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최종수요로만 쓰이는 것보다는 중간수요로도 쓰이는 것에 대항 수요가 크다고 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理論的 考慮에서 보았듯이, 美國등에서는 開途國이 서비스를開放함으로서 中間投入 서비스를 값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간수요로 널리 쓰이는 서비스業種을, 供給側의 다른 사정이 一定한 한, 먼저 自由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여기의 基準은 이러한 주장과 합치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 동일할 때, 한편으로는 消費者剩餘의 褐생을 줄이고 다른 편으로는 서비스의 聯關關係를 고려하는데 서비스 產業一般의 경쟁력을 提高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서비스業種의開放의順序를 決定하려 한다면, 다음

〈表〉 서어비스開放化順序의 메뉴

供給側 需要側 考慮	長距離 서어비스	需要者移動 단거리서어비스	供給者移動 단거리서어비스		國家安保, 外部 經濟와 관련이 있는 것
			더 경쟁적인 것	덜 경쟁적인 것	
中間需要로도 쓰이는 것					
最終需要로만 쓰이는 것					

表와 같은 “서어비스開放化順序의 메뉴”를 作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個別서어비斯業種에 대한 供給側 要因과 需要側 事情을 검토하여, 각종 서어비스業種은 이러한 메뉴표에 配列하여 놓고, 그것에 의거하여 왼쪽 위쪽에 위치한 業種으로부터 自由化해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國家安保와 관련이 있거나 큰 外部經濟效果를 가지는 서어비스業種의 自由化는 상당히 지연되게 된다. 서어비스交易을 自由化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장거리 서어비스보다 需要者가 이동하는 단거리 서어비스가 먼저 自由化되고, 공급자가 이동하는 단거리서어비스의 自由화는 그후에 추진된다. 다른 종류의 서어비스보다 논란거리가 되는 이러한 공급자 이동 단거리 서어비스중에서는 보다 더 경쟁적인 것이 먼저 自由化되고 덜 경쟁적인 것이 나중에 자유화 된다. 물론 이때 경쟁적인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의 서어비스生產의 基本原理에서 논의한 바, 서어비스生產에 소요되는 生產要素의 相對的 賦存度가 기본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상 供給側面의 고려를 보완하게끔 需要側面에서는 需要量이 더 큰 것이 먼저 自由화되도록 한다. 공급측 고려에 의해 自由化的順序가 같은 두가지 서어비스業種 중에는 수요가 더 큰 것이 먼저 開放되어 국제경쟁에 임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나. 自由化速度의 決定

이상과 같이 自由化的順序를 決定해 놓은 自由化的 메뉴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다음의 과제는 그러한 순서를 따라 自由화해 나감에 있어 어떠한 速度를 가지고 自由화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과제를 올바로 풀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課業일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능한 것은 南美의 自由化經驗을 비추어, 自由化的 基本目的에 합치하도록 자유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하고, 의의의 사태를 가져오는 자유화조치는 피해야 하겠다는 것을 막연하나마 原則으로 할 수 밖에 없겠다.

自由化的 基本目的이란 經濟內에서 資源分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市場메카니즘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經濟的 效用이란 財貨나 서서비스의 消費에 의존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면, 서비스의 自由化란 그것으로써 서비스의 生產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不充分하고 그것이 實物部門에서 財貨의 生產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도 함께 감안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南美에서의 自由化經驗은 微視的 效率性의 획득을 위한 自由화가 巨視에 安定化政策과 완전히 分離된 채 獨立的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알려 주고 있다. 自由化를 위한 장치가一定한 상태에서도 巨視政策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각각 시장에서의 價格이 달라지고 그에 대응하여 資源의 配分이 달라지게 됨을 알려 주고 있다.

또 石油派動, 先進國의 경기침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利子率 急變 등 個別經濟에 대해 外的 與件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同一한 내용의 자유화조치가 상이한 資源配分을 초래함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經濟自由化를 해 나가는 데 있어 外的 與件의 變化나 巨視經濟政策의 差異에 따라 나타나는 差別的 效果를 中和시킬 수 있는 方途를 자유화조치가 포괄해야 하겠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自由化措置란 不可逆的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市場에서의 價格體系가 급변하거나 크게 진동하지 않게끔 되어야 한다.

市場에서의 資源配分은 相對價格體系가 異期間 사이에서 급변하지 않아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며, 相對價格體系간 名目價格이 아니라 實質價格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自由化를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市場에도 영향을 미치는 實質利子率, 實質貨金, 實質換率 등 巨視的 價格變數가 異期間 사이에서 거의一定한 欽을 갖게끔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異期間 사이에 이러한 價格變數가 급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自由化를 漸進的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自由化가 이외의 사태를 가져 올 때에는 그것을 反轉시킬 수 있는 方途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外的 與件의 變化나 巨視經濟政策의 變動이 가져오는 영향이나 自由化조치가 초래하는效果가 확실히 이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갖가지 部門에서 同時に 自由化를 하고 나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식별해 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自由化는 段階的으로 조금씩 추진해야 할 것이며, 첫번째 自由化的 대상은 實物部門이 되는 것이 좋겠다. 實物部門에서의 效率的인 生產이 效用을 가장 크게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實物部門의 自由화가 이루어진 후이거나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서비스部門의 自由화를

폐할 수 있겠다. 이 때에도 위에서 제시한 方法에 따라 決定되어 있는 서비스 自由化順序에 의거하여 서비스部門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해야 할 것이며, 일단 한두 개 서비스業種을 自由化한 다음 그것이 實質利子率, 實質換率, 實質賃金 등에 미치는 영향과 각개 시장에서의 資源分配에 대한 영향을 점검한 연후에, 의의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음段階의 自由化를 집행하는 식으로, 自由化的 speed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단 취해진 자유화조치에 따라 의의의 資源分配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을 中和시키고 의의의 不作用을 해소하여 예정하고 있는 바의 自由化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自由化를 향해 사용할 수 있는 手段을 여러 개 준비해 놓고 그중一部만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일부는 備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의의의 不作用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비축해 놓은 手段을 가지고 그것을 中和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겠기 때문이다.

自由化的 執行에 관련된 여러가지 技術的 事項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手段을 써서 自由化를 향한 조치를 한 후, 의의의 충격이 나타날 때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도록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自由化를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보다 나은 自由化的 推進態度가 될 것이다.

4. 金融自由화와 관련된 유의사항

南美에서의 經濟自由화에 대한 實驗은 實物部門의 對外去來와 관련된 貿易自由化 보다 資本部門의 對外去來와 관련된 資本自由化가 더 큰 의의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잘못된 資本自由化가 實物部門에서 資源이 效率的으로 배분되고 生產力이 배양되며 對外的으로 輸出을 늘릴 수 있는 潛在力を 손상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資本自由化는 對內的으로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에서 自由化가 이루어지고 貿易自由化가 시행된 다음에 시도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摘示되었다.

잘못된 資本自由化는 實質換率을 下落시켜서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經常收支赤字를 초래함은 물론, 資本利得을 노리는 投資가 성행하게 하고 生產的投資를 위축시키기도 함을 알았다. 또 國際金融組織과의 去來에서의 기술적 사항때문에 大企業 등은 이 自由化的 혜택을 보게 되고 中小企業 등은 소외됨에 따라 한편으로는所得分配를 惡化시키고 다른 한편은 자본도피를 조장하면서 도덕적 타락의 문제를 제기함도 알았다.

이러한 폐해를 피하려면 잘못된 資本自由化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資本自由化를 회피하려면 미처 資本自由化를 집행할 단계가 못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資本自由化가 이루어짐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서비스自由化的 一種인 金融自由화가 사실상 資本自由化로 轉

化될 수가 있다. 金融市場에 각종 金融機關이 자유로이 參與하여 여러가지 金融의 루트를 活用하면서 갖가지 金融商品을 팔게 되면, 그러한 金融市場에 대한 規制가 사실상 不可能 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資本自由化가 상당한만큼 실제화되게 되며, 이러한 資本自由化는 위에서 적시한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金融自由化에 대해서는 다른 種類의 서비스의 自由化 보다 더 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III. 要約 및 結論

종래 서비스는 모두 非交易財로 인식되었으나, 交通·通信技術이 발달하게 됨과 더불어 그중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交易財化되었다. 서비스가 無形的이고 보관이 어렵다는 티에서 서비스는 생산되자 소비되어야 했다. 교통·통신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한 때에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去來는 國內的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술발달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져 서비스가 去來되는範圍가 國際的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와 서비스 交易自由化가 특히 美國에 의해 추진된 것은 美國이 經濟發展을 함께 따라 美國經濟가 서비스 經濟化하게 되었고 또 미국이 막대한 赤易赤字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수사정에 기인한다.

서비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것중에는 性質上 財貨와 大同小異한 것도 있고 生產要素로서의 資本이나 勞動의 국제적 이동을 필수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財貨와 크게 상이한 것도 있다. 생산요소의 이론을 요하는 서비스는 다시 그것의 生產을 위해서 資本이 보다 必須的이나 또는 勞動이 보다 必須的이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二分될 수 있다.

우루파이·라운드를 중심으로 하고 美國에 의해 그 自由化가 요구되고 있는 서비스는 주로 資本의 이동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것들이다. 그 반면에, 노동의 이동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서비스는 별 주목거리가 못되고 있다.

財貨는 일단 생산되고 나면 그 자체로서 獨立性을 띠게 되기 때문에 生產者와 分離되어 外國으로 팔려가서 消費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비스는, 적어도 生產者가 외국으로 가서 생산해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한, 생산된 서비스와 그것의 生產者가 分離되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交易에 있어서는 財貨의 交易에서는 없었던 問題, 즉 資本과 勞動의 國際間 移動의 問題 또는 國際投資 및 移民의 問題를 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흡족한 해결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어비스交易은 많은 異見과 분쟁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開途國의 입장에서 볼 때, 先進國에게 自由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관련 技術人力을出入하도록 하였다가는 그것의 여파로써 國家安保를 위협받게 되고, 또 外部經濟效果가 있거나 規模의 經濟가 보이는 產業을 外國企業에게 위양하여야 할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開途國은 이러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서어비스交易에 贊同하고 있지 않다.

서어비스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이 言及되었는데 이중에는 그것의 交易이 큰 異見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아무런 특별 고려 없이 쉽게 交易될 수 있겠으며 그러한 것의 交易은 比較優位의 原理를 따르게 될 것이다. 단 서어비스의 比較優位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生產要素의 인식이 전통적인 資本과 勞動의 二分法보다 더 실제적이어야 할 必要가 있다.

서어비스의 國際的 交易을 擴大하기 위하여 交易을 규율할 게임의 法則을 마련하려고 함에 있어, 財貨의 交易에 대한 規則이라고 할 수 있는 GATT의 규정을 출발점으로 택해 볼 수 있다. 즉 서어비스交易에 있어서도 최혜국대우, 내국인대우, 相互主義 등을 交易을支配하는 原則으로 취할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가지게 된 것을 기연으로 하여 商品의 交易에 대한 規則이 GATT의 原則으로 부터 점차 이탈하고 있다. 開途國에 대한 우대조항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弱化되고,相互主義를 해석함에 있어 開途國을 先進國에 비해 근원적으로 不利한 處地에 있기에 機械的으로同一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出發點을 달리 設定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꾸어지고 있다.

서어비스交易에 대한 게임의 規則에서도 이렇게 변화한 내용이 승계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성이 실제화되는 한 開途國은 서어비스交易과 더불어 종래 財貨交易 때의 그것보다 劣惡한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開途國은 이를 피하려고 努力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서어비스自由化가 어떠한 양상을 떨 것인지를 不確實하다고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下에서 外的으로 서어비스交易의 協商에 임하고 내적으로 서어비스開放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때 최선의 적용방법을 찾는 한가지로써 각종 經濟自由化的 실험을 많이 해 본 南美經濟를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 輸出自由化, 輸入自由化, 金融自由化, 資本自由化 등을 어떻게 추진했고, 그러한 경험의 연구에서 얻어지는 教訓은 어떠한 것인지를 팀구

해 볼 價値가 있다.

이러한 自由化實驗으로부터의 교훈에 의하면, 各個市場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려고하는 經濟自由化는 實物部門의 效率性을 보장·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部門의 自由화로 인하여 實物部門의 效率성이 弱化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實物部門과 관련된 貿易自由化보다 資本自由化를 먼저 시행한다면 實物部門의 效率성이 위험받게 될 염려가 있다. 그流入이 일단 抑壓되고 있던 外國에 資本이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開途國으로 流入되게 되면, 이것이 實質換率을 떨어뜨림으로써 輸出競爭力を 弱化시키고 輸入을 助長하여 成長潛在力を 마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미의 경험에 의거할 경우, 經濟自由化란 그것이 實物部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예의 검토하면서 漸進的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어비스自由化도 經濟自由화의 一種이기에 이러한 原則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다.

南美 여러나라에서의 經濟自由화에 대한 경험은 위의 몇 가지 교훈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南美에서 서어비스交易은 별 關心거리로 되어 있지 못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서어비스自由化가 절대 추진해서는 안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서어비스自由化 이상인 資本自由化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후 후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어비스自由化가 별도로 신경을 써야 할 課題로서의 價値를 잊고 있다.

우리나라는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택해 오면서 實物部門에서 상당한 自由化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외 부문을 보면 實物部門의 自由화와 관련되어서 限定的인 金融自由化가 이루어졌을 뿐, 資本自由화는 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게는 서어비스自由化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서어비스自由화의 課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얻어진 바 우리나라의 입장은 보면, 서어비스交易에 대한 규칙을 多者間協商을 통해 規定하게 되는 것을 친성하여, 소위 브라질, 인도등 강경개도국과 입장은 달리하고 있다. 또 교역과 관련된 규칙으로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 지지하고, 개도국우대원칙, 勞動移動을 핵심으로 하는 서어비스를 資本移動을 핵심으로 하는 것과 대등하게 취급할 것 등을 요망하고 있다.

우리는 차후 서어비스部門을 開放함에 있어 서어비스業種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開放의順序를 決定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순서에 따라 開放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業種이 實物部門의 效率性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안하여 開放의 速度를 決定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自由化의一部인 金融自由化는 서비스自由化가 함축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金融自由化에 따라 金融去來가 多岐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상의 資本의 流出 또는 資本의 流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金融自由化가 證券會社의 營業을 無制限 自由化하는 것으로 되면 資本自由化는 實質的으로 뿐만 아니라 名目的으로도 실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렇게 金融自由化가 資本自由化를 실체화하게 되면 그로써 앞에서 資本自由化의 영향으로 이해하고 경계했던 결과가 사실상 나타날 수 있다. 특히 實物部門의 사정을 무시한 채 독주하는 잘못된 資本自由化가 실체화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서비스自由化에 관련된 세부 문제중에서도 金融自由化는 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課題가 된다.

· 參 考 文 獻

- 金仁哲, 「서비스開放의 問題와 政策方向」, 『KDI 分期別經濟展望』, 1986.
- 朴在潤, 「金融開放의 課題과 接近」, 『金融研究』, 1985.
- 閔庚輝外, 「서비스產業의 成長과 構造變化」, 產業研究院, 1986.
-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New Round 關聯資料』, 1986.
- 大韓貿易振興會社, 『國際서비스 貿易自由化論議現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1986.
- 商工部 通商振興局, 『서울世界通商長官會議關聯資料』, 1986.
- 財務部 證券保險局, 『日本證券市場의 國際化過程과 現況』, 1984.
- 證券監督院, 『日本의 資本自由化와 外資規制』, 1985.
- 日本貿易振興會編, 『서비스貿易의 現況과 自由化的 움직임』, 產業研究院刊, 1985.
- 韓國銀行, 『一般銀行의 發展方向에 대한 研究』, 1981.
- 韓國保險學會, 『保險產業의 發展方向研究』, 1985.
- Korea Federation of Banks, *Internationalization of Banking And Finance-Analysis and Prospects*, 1984.
- Korea Federation of Banks,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Reform*, 1984.
- C. Dias Alejandro, "Goodbye Financial Repression, Hello Financial Cras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985.
- C. Dias Alejandro, "Latin American Debts: I Don't Think We Are in Kansas Anymo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984.
- B. Balassa, "Reforming the System of Incen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

- lopment, 1976.
- B. Balassa,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in Developing Economies," *World Development*, 1982.
- S. Benz,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Global Service Economy," *Journal of World Trade Law*, 1985.
- J. Bhagwati, "Trade in Services and the MFN," Paper at the World Bank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1986.
- J. Bhagwati, "Splintering Disembodiment of Services and Developing Nations," *The World Economy*, 1984.
- J. Bhagwati,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Its Relev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Emerging Service Economy*, Service World Economy Series No. 1. Pergamon Press, 1986.
- J. Bhagwati, "VERs, Quid Pro Quo PFI and VIE: Political Economy-Theoretic & Analysi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987.
- J. Bhagwati, *Anatomy and Consequences of Trade Control Regim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8.
- CEPAL, *The Economic Crisis: Policies for Adjustment Stabilization and Growth*, VN, 1986.
- H. Chenery and A. Strout,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966.
- H. Chenery and M. Bruno, "Development Alternatives in an Open Economy: The Case of Israel," *Economic Journal*, 1962.
- W. Cline and S. Weintraub(eds.), *Economic Stabi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rookings Institutions, 1981.
- W.M. Corden, *Trade Policy and Economic Welfare*, Clarendon Press, 1974.
- A.M. Choksi D. Papageorgion(eds.), *Economic Libe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sil Blackwell, 1986.
- V. Corbo, "Problems, Development Theory and Strategies of Latin America" World Bank Discussion Paper, Report No. DRD190, 1986.
- V. Corbo and J. de Melo, "Liberalization with Stabilization in the Southern Cone: Overview and Summary"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
- V. Corbo, J. de Melo and J. Tybout, "What Went Wrong with the Recent Reforms in

- the Southern Con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86.
- V. Corbo and J. de Melo, "Lessons from the Southern Cone Policy Reforms", (mimeo) 1986.
- R. Devlin, "External Debt and Crisis: The Decline of Orthodox Strategy", *CEPAL REVIEW*, 1985.
- R. Devlin, "Socio-Economic Restructuring in Latin America in the Face of Foreign Debt and A Transfer Problem," (mimeo), 1987.
- S. Edward, "The Order of Liberalization of the External Sector: An Analysis Based on Southern Cone Experience," (mimeo), 1985.
- S. Edward, "Monetarism in Chile 1973~1983, Analytical Issues and Economic Puzzl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86.
- S. Edward and S. van Wumdergen "The Welfare Effects of Trade and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986.
- A. Ewing, "Service Trade and LDCs," *Economic Impact*, 1986.
- A. Ewing, "Why Free Trade in Services in the Interest of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World Trade Law*, 1985.
- J. Frenkel, "The Ord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Discussion," in K. Brunner & A. Meltzer(eds.), *Economic Policy in a World of Change*, North Holland, 1982.
- R. Ffrench-Davis, "External Debt, Renegotiation Frameworks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Monograph No. 13 Stockholm, 1986.
- M. Gibbs, "Continuing the International Debate on Services," *Journal of world Trade Law*, 1985.
- H. Grubel, "There is no Direct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The Fraser Institute Service Project Discussion Paper 86-3, 1986.
- H. Grubel, "Direct and Embodied Trade in Services," The Fraser Institute Service Project Discussion Paper 86-1, 1986.
- H. Grubel, "Trade in Financial Services, Its Nature, Causes, Growth Prospects and Social Effects" in H. Tan and B. Kapur(eds.), *Pacific Growth and Financial Interdependence*, Allen and Unwin, 1986.
- GATT, *Services; Summary of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85.
- GATT, *Series of National Studies on Trade in Services*, 1983.

- GATT, *Services: Analytical Summary of Information Exchanged Among Contracting Parties*, 1985.
- J. Hanson and J. de Melo, "External Shocks, Financial Reforms, and Stabilization Attempts in Uruguay During 1974~83," *World Development*, 1985.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 1985 Report, 1986 Report, 1985, 1986.
- K. Iwata, "Liberalization of Trade in Financial Services" PAFTAD Conference Paper, 1987.
- C. Kindleberger, *Manias, Panics and Crashes*, Basic Books, 1978.
- A. Krueger, *Foreign Trade Regime and Economic Development: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 Ballinger Press for NBER, 1978.
- C. Lee and S. Naya, "US-Asean Trade and Investment in Services, An American Viewpoint" (mimeo), 1986.
- W. Miklius, "Ocean Transport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mimeo) 1986.
- R. Mckinnon, "The Order of Economic Liberalization: Lessons from Chile and Argentina," in K. Brunner and A. Meltzer (eds.), *Economic Policy in a World of Change*, North-Holland, 1982.
- R. Prebisch, "Commercial Policy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959.
- R. Prebisch, "International Menetary Indiscipline and The Debt Problem", *Journal of Development Planning*, 1985.
- J. Ramos, "Stabilization and Adjustment Policies in the Southern Cone, 1974~1983," *CEPAL REVIEW*, 1985.
- J. Ramos, *Neoconservation Economics in the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1973~1983.*,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T.M. Rybczynski,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788, 1986.
- J. Sachs, "LDC Debts in the 1980s: Risk and Reforms" (mimeo) 1982.
- K. Saini, "Capital Market Innovations and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784, 1986.
- A. Sapir and E. Lutz, *Trade in Services: Economic Determinants and Development-Related Issues*, IBRD Staff Working Paper No. 480, 1981.
- R. Shelp, *Beyond Industrialization*, Praeger, 1981.

- L. Sjaastad, "Failure of Economic Liberalism in the Cone of Latin America," *The World Economy*, 1983.
- R. Snape, "Prospects of Liberalizing Services Trade," PAFTAD Conference paper, 1987.
- J. Spero,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1982.
- R. Stern and B. Hockman, "Conceptual Issues Relating to Servic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mimeo), 1986.
- Y. Sung,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Entrepot Trade: Hong Kong, Singapore and Their Roles in China's Trade", PAFTAD Conference paper, 1986.
- L. Tayl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ing Country Debt: An Informal Guide for the Perplexed," *Journal of Development Planning*, 1985.
- S. Teitel and F. Thoumi,"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Latin America Since 1960: A Comparative Analysis,"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86.
- UNCTAD, *Production and Trade in Services, Policies and their Underlying Factors Bearing Upon Internatoinal Service Transactions*, Document TD/B/941, UNCTAD Secretariat, 1983.
- UNCTAD, *Services and Development Process*, TD/B/1008, 1984.
- R. Zabler, "The Monetary and Real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f National Economies to the Exterior, the case of Chile, 1975~78," *CEPAL REVIEW*, 1980.
- R. Zabler, "Recent Southern Cone Liberalization Reforms and Stabilization Policies; The Chilean Case, 1974~1982,"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1983.